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8 -17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12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「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('18.1.19)」 후속 조치로 추진된 예대출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예대출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상향(+15%),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(Δ 15%),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등은 중립적으로 적용(0%)

* 은행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'20.1.1일부터 적용

나. 예대출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%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*하여 CD발행유인을 제공

* 현재 CD금리는 대출, 파생 등의 준거금리로 쓰이고 있으나 발행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

다.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

*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→ 신규여신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

라. 기타 '17.6.19 부동산 대책 및 '17.8.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, 의미를 명확화

①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, 직계존속

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

- ②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
- ③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'기존 주택 처분 후 상환'으로 명확하게 규정 등

3. 세부 개정 내용

□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'고시·공고·훈령'을 참조*

*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·공고·훈령